

## LEGAL DUTY

ISSUE PAPER

CHECK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 건설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의무

### ● 들어가며

건설공사는 계획, 설계, 시공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따라서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공 단계에서만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져서는 안 되며 계획, 설계, 시공 등 각 단계에 부합하는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각 단계에 참여하는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다양한 조직과 사람들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 중에서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설계자를 선임하고 시공자를 선정하는 등 전체 건설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양한 조직과 사람들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따라서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크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주요 의무들을 정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그 주요 의무들의 적용 대상, 적용 시점 등은 총공사 금액,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살펴보기 바란다.

## ● 산업재해 예방 조치

총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획, 설계, 시공 단계별로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첫째,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둘째,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는 앞서 살펴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앞서 살펴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앞서 살펴본 각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시간을 계상·설정하여야 한다.

##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공 단계에서만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져서는 안 되며, 계획, 설계, 시공 등 각 단계에 부합하는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는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이다.

안전보건조정자는 상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이하 같음)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걱정 공사기간 및 공법 보장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 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 또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만약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면, 건설공사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거나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변경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법에서 정한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법에서 정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예외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공사 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법에서 정한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에서 정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산업재해 예방 지도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 비율 등 기준 ▲그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함)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